확 인 서

본인은 2023. . . 안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는 바,

①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경우 ( )
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(오늘)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(2023. . . ~ 2023. . .)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임을 확인하며,

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오늘까지의 총 일수 :
■ 총일수의 3분의 1 일수 :
■ 같은 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받은 날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 :

②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경우 ( )
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(오늘) 이전 14일간(2023. . . ~ 2023. . .)에 근로한 날이 아래와 같이 없음을 확인하며,

추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이상(①에 해당하는 경우)이거나,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일간에 근로한 날이 있다(②에 해당하는 경우)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산고용센터 수급담당자로부터 분명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구분	달력(근로 제공일에 ○표시)																총일수
월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	일
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	
월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	일
	16	17	18	19	20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	

※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(반일만 근무해도 1일로 계산)

※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이었던 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(반일만 근무해도 1일로 계산)

2023. . .

성명 : (서명)

생년월일 :

중부지방고용노동청(안산지청)장 귀하